

## EB-5 투자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최근 영주권 취득방법 중에 EB-5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 한인사회에도 늘고 있습니다. EB-5 비자는 미국 경제성장 및 발전에 도움이 되며, 이에 연관된 기업체 또는 정부기관에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최소 10 명의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미국에 설립, 이민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미국의회가 1990 년 처음 만들어 1992 년 실시된 비자 종류입니다.

EB-5 투자비자는 비자 청원이 승인되는 바로 2 년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 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이후에 조건부를 없앤 후, 투자자와 그의 가족은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B-5 투자비자는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각 주의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해야 하는데, 최소 백만달러를 투자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센터안에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인구가 2 만명 이하인 농촌지역(Rural Area)이 속한 경우는 50 만불 투자금액으로도 투자, EB-5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역센터는 각 주 정부에서 시정한 지역이며 이민국에 지역센터가 이민법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합니다. 이러한 EB-5 프로그램들은 현재 독립투자보다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으로 운영, 회사와 지역센터의 주 정부가 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경험이 없는 투자자라도 사업파트너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 사업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EB-5 비자는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다음의 비자 청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업체는 2 년내지 2 년이 넘더라도 합당한 시간안에 최소 10 명의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접적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센터에 연계된 경우,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의미하므로 꼭 10 명의 정규직 창출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투자자금은 현금, 장비, 재고품, 유형자산등으로 정의되며,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져온 투자자금이나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투자자금이 합당한 방법으로 취득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매매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용자 서류, 증여성 자금 및 상속재산 관련서류, 은행통장 등의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체를 담보로 한 용자는 투자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탈세를 한 경우, 이민국은 투자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서류들로 보아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자금에 대해서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B-5 비자의 수속은 투자금 송금 후,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 승인이 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미국입국 후에는 2 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는데 2 년동안 투자한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2 년간의 조건부영주권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 해지를 위해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구 영주권 발급 이후에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EB-5 는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장기간의 수속과정 등의 어려움이 있는 타방법들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근거로 한 영주권 3 순위의 경우, 학사 학위의 자격조건을 요구하며,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그 수속과정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과 후의 시간을 통합하여 평균 7 년 내지 10 년이 걸리는데에 비하여 EB-5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은 몇개월, 영구 영주권은 약 2 년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이러한 EB-5 비자 프로그램과 연관된 지역센터와 사업체들과 협력, EB-5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EB-5 비자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로펌으로 문의 바랍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617) 877- 3435

웹사이트: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wyer.com](http://www.suhlwyer.com)